



관세청

Hi! 청렴. Bravo! 관세청

인천세관

001-74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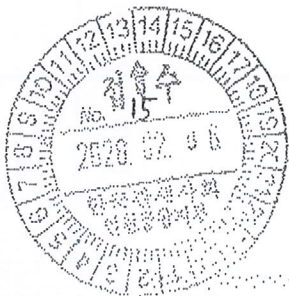
수신 관내 관세사무소 등
(경유)

제목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수출신고관련 협조요청

1.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수출시 아래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하오니, 수출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제조자가 수출 : 제조확인서 등 제조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
- 매입하여 수출 : 국내 매입서류, 구매영수증 등 매입일자 및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. 끝.



인천세관장



관세행정관 최송화

관세행정관 심택주

공함수출과장 오영진 전광 2020.2.6.

협조자

시행 공함수출과-512

(2020. 2. 6.)

접수

우 22361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70, (운서동) 인천세관 공함 / http://www.customs.go.kr/incheon
수출과

전화번호 032-722-4191 팩스번호 032-722-3835 / sh00012345@customs.go.kr / 비공개(5)

한국관세사회
인천공항지부

청렴한 민선, 행복한 국민, 신뢰받는 관세청

1/2

전회원 이침통보함

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관련 협조요청

○ 관세청 특수통관과-562 (2020.2.5.)와 관련입니다.

○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가 정확한 신고없이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○ 이와 관련, 관세청에서 공지한 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(협조요청 사항) 보건용 마스크의 품명, 가격, 수량 등 신고 사항 확인 후 정확히 수출신고 하고 불법반출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에 통보

※ 문의 : 관세청 특수통관과 ☎ 042-481-7854

참고**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 기준**

□ 보건용 마스크는 통관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
1.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이하 : 여행자 휴대반출 허용(자가사용 인정)
2. 200만원 이하이면서 1,000개 이하 : 간이수출신고
3. 200만원 또는 1,000개 초과 : 정식 수출신고